질 병 관 리 청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 안내 요청

1. 관련: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(보건복지부령 제749호)
   - 안전관리책임자 직무에서 '소속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 실시'

2. 의료방사선의 지속적인 이용량 증가로 인해 의료방사선에 대한 직업적 방사선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,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일환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.

3. 귀 학회·협회께서는 소속 회원들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종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교육 자료

※ 교육자료 : 질병관리청 홈페이지(http://www.kdca.go.kr)의 「정책정보」→「의료방사선안전관리」→「의료방사선게시판」→「교육 및 가이드라인」→「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」에 공개되어 있습니다. 끝.

질 병 관 리 청 장

수신자 대한영상의학회, 대한영상치의학회, 대한방사선사협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개원의협의회, 대한치과위생사협회

전문연구원	**원종훈**	보건연구사	**길종원**	공업연구관	대결 2020. 12. 24. **이병영**	과장	전결
협조자							

시행 의료방사선과-1125 접수

우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, 질병관리청 / http://kdca.go.kr

전화번호 043-219-2875 팩스번호 043-719-7519 / jh901206@korea.kr / 대국민 공개